

생명윤리에 관한 법적 규정의 시급성

연 전의 돌리양 복제와 작년의 계놈 프로젝트 성공, 유전자 공학의 발달에 비추어 볼 때 인간복제와 주문에 따른 형태와 기능을 갖춘 인간의 인위적 대량 생산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학기술의 경이로운 성취임에 틀림없는 이러한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윤리적 악몽으로 나타났다.

과학 지식을 의학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오는 윤리적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개복수술, 장기이식, 안락사, 낙태, 인공수정은 아직도 보편적 공감대를 찾을 수 없는 뜨거운 윤리적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같은 새로운 의술과 생명공학의 발달은 그것의 적용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줄 곳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절대 다수의 입장과는 달리 개신교의 한 파인 '여호와의 증인'은 인간신체의 신성성(神聖性)을 근거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윤리적으로 일절 거부한다. 역시 개신교의 일 파인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들도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널리 실행되고 있는 개복수술, 뇌수술, 안락사, 낙태, 장기이식, 인공수정, 대리모에 의한 아기 등은 그 광경을 상상만해도 끔찍하게 느껴지고, 종교적 혹은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일들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생명체의 개입과 생명의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분명해진 세포 복제에 의한 인간의 대량생산이나 인간의 무한한 조작가능성은 그 이전의 경우와 질적으로 다르다. 그 차이는 그 이전까지는 인위적 개입과 조작이 이미



朴 異 汶

한국생명윤리학회 명예회장/
시몬즈대 명예교수

구성되어 있는 생명의 인위적 보완에 그치는 것인 데에 반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인위적 개입과 조작은 인간 생명 자체의 인위적 조작과 제조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서의 생명에의 과학적 개입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의 절대적 가치, 즉, 신성성을 기본적 전제로 하는 윤리와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바로 여기에 최근의 생명공학이 과거의 어떠한 과학기술의 의학적 적용보다도 더 끔찍한 윤리적, 그리고 사회적 악몽으로 나타나는 까닭이다.


더 크고 현실적인 문제는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첨단 생명공학이 물고온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입장 정리와 행동선택은 불가피하고 이러한 입장 정리를 위해서는 윤리적 판단의 기본적 준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기존의 윤리적 판단의 기본적 준거의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인 윤리적 판단이 늘 서로 같든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윤리의 기본적인 근거를 새로이 찾아내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우선적으로 첨단생명공학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정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새로운 윤리적 원칙이 정립될 때까지는 전통적 기존의 윤리적 원칙에 입각하여 첨단생명공학의 개발과 적용을 법적으로 규제 및 제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단계에서 머물 수

없다. 적극적으로는 윤리학자와 생명과학자는 물론 사회의 각계 각층이 참가할 수 있는 다각적 공론의 마당을 통해서 첨단생명공학의 윤리적 도전에 잠정적일지라도 가장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근거를 창출하는 일이다. 마지막 과제는 이러한 작업이 끝난 다음 그러한 윤리적 원칙에 근거한 세분된 윤리적 규범을 입법화하고, 그러한 법에 입각하여 첨단생명공학

을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이 경우 잠정적으로 규제되었던 생명공학의 연구, 개발 및 적용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서 인간의 대량 복제, 인간의 대량 생산까지도 묵인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또다시

더 이성적인 윤리 원칙이 사회적으로 창출되었을 때 법적으로 해제되었던 생명공학은 윤리적으로 규탄되고 법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의 의학적, 사회적 및 윤리적 파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학문적 및 기술적 상황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응용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어쩌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감당할 수 없는 후환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현재 윤리적으로나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생명공학자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잠정적이거나 생명공학에 대한 세분된 법적 규정의 선포와 그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첨단생명공학의
 의학적, 사회적 및 윤리적 파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학문적 및
 기술적 상황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응용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다.